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46
----------	---------

제출년월일 : 2021년 6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인원 확대 및 위원 자격요건 정비 (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총 위원수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됨.
  -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 내부위원 자격요건 중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체화

나. 공직유관단체 추가지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관할대상 조문내용 변경 (안 제3조)

-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추가 지정·고시에 따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변경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7조)

-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구체화

라. 그 밖에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맞춤법 등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6호, 제9조제3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1. 3. 31. ~ 4. 20.)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를 “제9조”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5명”을 “7명”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법관, 교육자 또는”을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로,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자 중”을 “사람 중”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강서구 소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4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대상”을 “관할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급이하”를 “5급 이하”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을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5급이하”를 “5급 이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당시”를 “임명 당시”로 “재직중”을 “재직 중”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계있는”을 각각 “관계 있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행하게 하기”를 “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u>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9조</u> ----- ----- ----- <u>공직자윤리위원회</u>----- ----- ----- ----- ----- -----.</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u>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3명</u>의 위원은 <u>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u> 중에서 위촉한다.</p> <p>2. 2명의 위원은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1명과 <u>강서구 소속 공무원</u>(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제2조(구성) ① <u>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 <u>7</u>명----- ----- -----.</p> <p>1. <u>5명</u>----- <u>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u> ----- <u>사람 또는</u> ----- <u>사람</u>중-----.</p> <p>2. ----- ----- ----- <u>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4</u>급 <u>이상</u> ----- -----.</p>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생략)

③ (생략)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 4. (생략)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② -----  
-----  
-----.

1. ----- 5명-----  
-----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기능) ① -----  
-----.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

2. ~ 4. (현행과 같음)

5. ----- 관계법령-----  
-----

② ----- 관할 대상-----  
-----.

1. ----- 5급 이하 -----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 ----- 5급 이하 -----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구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  
간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  
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생략)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 소속 공무  
원 -----  
-----  
-----  
----- 임  
명 당시의 ----- 재직 중인 ----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관계 있는-----
2. -----  
-----  
----- 관계 있는-----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  
-----  
--- 하기 -----  
-----.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지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감사담당관 김 진 철

(담당: 행정8급 조은성 / ☎ 2600-6011)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안이유

-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인원 확대 및 위원 자격요건 정비 (안 제2조)
- 나. 공직유관단체 추가지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관할대상 조문내용 변경 (안 제3조)
-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7조)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1 - 17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이경민
입안주무부서	감사담당관	통보(조치)일		2021. 4. 15.	
관련 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서울강서018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조은성	전화번호 02-2600-601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2021년 04월 15일</p> <p><b>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b></p> <p>(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p> <p>감사담당관장 귀하</p>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7. 29.>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